



5.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

연혁	① 미국의 쉰크 판결(Schenck v. United States, 1919)에서 홈즈 대법관은 존 스튜어트 밀의 위해원칙(Harm principle)을 기초로 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만들었다. ② 명백·현존한 위험의 원칙(rule of clear and present danger)은 연혁적으로 언론과 출판이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려고 하는 경우에 법원이나 관계기관이 정지명령 등으로 이를 제지하고 할 때 사용하는 기준에서 출발하였다.
관련 판례	①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 위 한정합헌 결정에서 명백한 위험(현존성 x) 만을 요구하고 있다(헌재 89헌가113) . ② 우리 대법원 판례는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의 적법요건으로 ‘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 ’ (현존성x)일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(대판 2010도6388). ③ 우리 대법원 판례는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의 직사살수의 사용요건으로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 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(대판 2015다236196)

11 위험 개념 중 ‘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?

- ① 명백하고 현존 위험의 원칙(rule of clear and present danger)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언론·출판 등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판시한 원칙이다.
- ②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각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·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한정합헌 결정을 하였다.
- ③ 우리 대법원 판례는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의 적법요건으로 ‘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’ 일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.
- ④ 우리 대법원 판례는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의 직사살수의 사용요건으로 명백하고 현존 위험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.